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보증처용)

이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은행과 보증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 및 지급보증의 상대처(이하 “보증처”라고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급보증 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신청인 및 보증처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은행, 신청인 및 보증처 사이의 지급보증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은행”이란 신청인과 지급보증 약정을 하고 서면 또는 전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2. “지급보증”이란 신청인이 보증처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행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의 여신을 말합니다.
 3. “서면 지급보증서”라 함은 은행이 지급보증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4. “전자 지급보증서”라 함은 은행이 지급보증하는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시행세칙,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지급보증서의 발급 및 조회) 지급보증서의 발급 및 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서면 지급보증서
은행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대내지급보증의 경우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서 서면 지급보증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자 지급보증서
가. 은행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보관하며 신청인 및 보증처에게 별도의 원본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발급된 전자 지급보증서는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서 제 4 조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보증처는 전자 지급보증서를 지급보증 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출력할 수 있으며, 추가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최대 2 회(총 5 회)를 추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다. 전자 지급보증서 출력본은 원본이 아닙니다.
라. 전자 지급보증서는 사업자 번호가 있는 기업용(개인사업자 포함) 지급보증으로 보증처가 국내에 소재하는 대내 지급보증에만 적용됩니다.

제 4 조 (공인인증서의 사용 및 관리) (1) 전자 지급보증서를 이용하는 신청인과 보증처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기업용(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보증처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전자 지급보증서 발급당시의 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처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한 후 전자 지급보증서의 갱신(연장) 및 해지, 보증 채무이행 청구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 5 조 (보증금액) 서면 및 전자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은행은 보증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채무보증의 경우 분할상환조건에 따라 상환된 금액은 보증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제 6 조 (보증채무 이행청구) 보증처는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은행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처는 보증기일 만료일 전이라도 신청인의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파산·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피보증 주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의 사유가 생기면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서면 지급보증서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는 보증처가 서면 지급보증서 원본, 이행청구 관련 증빙서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를 직접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 지급보증서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는 보증처가 전자지급보증서의 출력본, 채무 이행청구 관련 증빙서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직접 은행에 제출한 후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서 제 4 조

- 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완료된 시점은 보증처가 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였을 때로 합니다.
3. 보증처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존재하는 피보증채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구금액, 청구시기, 기타 제반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함으로써 은행이 조기지급 또는 과다지급을 한 경우 보증처는 은행이 조기 지급한 금액 전액 또는 과다 지급한 차액 및 해당금액에 대하여 은행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보증처는 이를 이행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서면 지급보증서의 원본 또는 전자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이 위조·변조된 경우
나. 서면 지급보증서의 원본 또는 전자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을 지급보증 목적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전자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이 은행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원본과 다를 경우

제 7 조 (보증채무의 소멸) 은행의 보증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멸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을 때
2. 피보증채무가 소멸된 때

제 8 조 (지급보증의 해지) (1) 신청인이 보증기한 만료 전 지급보증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은행은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보증기한 경과 후에도 지급보증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인은 보증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보증을 해지하는 날까지 은행과 약정한 보증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서면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신청인이 보증서 원본을 회수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보증처가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서 제 4 조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지급보증 해지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전자 지급보증서 이용시간) (1) 신청인 및 보증처는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 게시된 이용시간 이내에 전자 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시간은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 영업일전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와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또는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0 조 (양도 또는 질권설정)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보증처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권으로써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서면 지급보증서의 원본 또는 전자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 11 조 (분실·도난 또는 멸실) 신청인 또는 보증처는 서면 지급보증서의 원본을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면책) 전자 지급보증서에 관한 사항 중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면책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상 손실부담 및 면책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약관적용 및 교부) (1)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시행세칙,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합니다.
(3) 은행은 서면 및 전자지급보증서의 신청인과 보증처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약관을 교부 합니다.

1. 은행은 신청인에게 지급보증거래 약정시에 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을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2. 서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기재한 지급보증서 원본을 보증처가 접수한 때 은행은 보증처에게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합니다.
3. 전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증처가 제 4 조의 공인인증서로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은행은 보증처에게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합니다.